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5
----------	-----

2024. 12. 11.(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영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6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도민 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전용주차구역 화재대응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장소의 특성상 현장 대처가 어렵고 전이 속도가 빨라 새로운 화재진압 기술이 필요한 현실이며, ‘24. 8. 1.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이슈화됨.

※ 청라화재 피해 : 전소(42대), 부분소(45대), 그을림 피해(793대)

- 충북은 ‘24. 6. 기준 22,231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지 역	‘23년말	‘24년 6월	증감대수	증가율(%)
충 북	19,972	22,231	2,259	10.2

※ 충북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리고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임.(신축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은 5% 이상)
- 신규 건축물은 지상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기존 충전시설의 지상화는 부지 확보 자체가 곤란한 현실임.

-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외부 공기흐름 차단과 배연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주변 차량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음.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설비 등 기존 소방시설은 배터리에 직접 주수가 되지 않아 진화 곤란)

- 또한, 열폭주 현상으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량의 연기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접근 자체가 곤란

(화재발생 시 배터리에 직접 주수하거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상방방사관창 등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함)

- 충전시설 지상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환경친화적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차량소유주와 일반차량 주민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존재.

(여름철 화재 위험성 증가, 겨울철 배터리 효율 저하, 폭염과 한파, 폭설과 폭우에 노출되는 차별 발생)

-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다부처 성격이 강한 이유로 관련법규의 개정은 지지부진함.

- 관련법률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 자체가 보류될 수 있어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충전시설 화재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의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비고 (제안일 진행상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u>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u>	'24.8.5. 소관위접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u>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 포함</u>	'24.6.27. 소관위접수
	박용갑 의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u>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u>	'24.8.7. 소관위접수
	김상욱 의원	○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u>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u>	'24.8.7. 소관위접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u>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u>	'24.8.7. 소관위접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u>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u>	'24.8.7. 접수

※ 국회 충전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안 발의현황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나목은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 수립과 시행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 상기 내용과 같은 법률적 의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정당성 및 적합성은 타당함.
-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충전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광주·대전·경북·경남·충남·전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성 강화 및 지상 설치를 권고함.
- 인천·경북·부산·충남·세종·서울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전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관련 법률 제·개정 전 조례를 우선 제정하여 막연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정책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등에 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전용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대응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관계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11. 19.~'24. 11. 2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화재예방과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775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5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3일
발 의 자 : 황영호,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도민 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마.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전용주차구역 화재대응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 다. 협 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라. 조례안 예고 : '24.11.19.~'24.11.25.(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압대응장비)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장비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

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며,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장비 확충 현황 >

- '22년 :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71백만원

- '23년 : 이동식 침수조 109백만원

- '24년 : 화재진압장비(하수부관창등) 104백만원

※ 추후 법령 등에 따른 비용발생 시 관련규정 재정비 실시